

##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류제동 의원 발의 )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고흥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각종 공공·민간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많은 외부재원 발굴·확보를 통해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프로젝트팀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4. 예고기간

○ 2020. 7. 8. ~ 7. 28. (20일간)

##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7. 29.(수)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59542)

- 전 화 : 061-830-6065 (FAX 061-830-5595)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1.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석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고흥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 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